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836호 2014년 2월 21일(금)

공 고

○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 및 『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2월 21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

2. 개정이유

환경부의 「하수도조례 기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감면기준 신설

-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함. (안 제16조제3항)
-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. (안 제16조제4항)

1. 존치기간 1년 미만 : 면제
2. 1년 이상 3년 미만 : 100분의 70
3. 3년 이상 5년 미만 : 100분의 50
4.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0분의 30
5. 10년 이상 : 100분의 10

나.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

- 시장이 직접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(안 제21조제2항제3호)
-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, 그 시설물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하는 경우 (안 제21조제2항제4호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수질환경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217-100 / 속초시 해오름로 99(대포동)
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
(전화 : 033-639-2932, FAX : 033-639-2497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(033-639-29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제16조제2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8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1. 존치기간 1년 미만 : 면제
2. 1년 이상 3년 미만 : 100분의 70
3. 3년 이상 5년 미만 : 100분의 50
4.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0분의 30
5. 10년 이상 : 100분의 10

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장이 직접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
4.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, 그 시설물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(생략) ③ 제17조에 따른 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·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이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 <신설> <신설>	제16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8조에 따른 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·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이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 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1. 존치기간 1년 미만 : 면제 2. 1년 이상 3년 미만 : 100분

의 70

3. 3년 이상 5년 미만 : 100분

의 50

4.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0분

의 30

5. 10년 이상 : 100분의 10

제21조(감면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<신설>

제21조(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. <삭제>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시장이 직접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

4.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, 그 시설물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

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(제21조제2항)

구분	감 면 비 율			
	신축	증축	용도변경	양성화
업종				
기 초 생 활 수 급 권 자	50%	50%	50%	100%
재 난 지 역 대 상 자	100%	-	50%	100%

주) 감면비율은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.

<계산 예>

-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이 20백만원이고 감면비율이 50%인 경우 최종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액은 ?
 =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(20백만원)-감면액(20백만원 × 50%=10백만원)
 = 10백만원 (최종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액)

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(제21조제2항)

구 분	감 면 비 율			
	신축	증축	용도변경	양성화
제 1 호 에 해 당 하 는 자	50%	50%	50%	100%
제 2 호 에 해 당 하 는 자	100%	-	50%	100%
제 3 호 에 해 당 하 는 자	100%	100%	100%	-
제 4 호 에 해 당 하 는 자	100%	100%	100%	-

주) 감면비율은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.

<계산 예>

-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이 20백만원이고 감면비율이 50%인 경우 최종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액은 ?
 =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(20백만원)-감면액(20백만원 × 50%=10백만원)
 = 10백만원 (최종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액)